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 김 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33호)

2026. 7.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38조제2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 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20.

다.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3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 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유효기간: 시행일로부터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¹⁾²⁾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2026. 2. 10.>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2) 국가연구개발(R&D)사업(제1항제3호)도 대상이었으나,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26.2.10.)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³⁾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분야와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⁴⁾

최근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국가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의료인력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3)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이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2%,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4%로,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비율 53.9%, 69.9%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연도별 우리나라와 OECD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 비율]

(단위: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공공의료기관	우리나라	6.7	5.8	5.4	5.2
	OECD	52.3	53.5	52.9	53.9
공공병상	우리나라	13.0	10.5	9.7	9.4
	OECD	74.2	74.6	71.8	69.9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2017년, 2022년, 2024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설을 포함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으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신축할 경우 총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해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B/C값(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공공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실제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을 위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14건 중 5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공공보건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현황]

(단위: 억 원)

선정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조사결과 (완료연도)	B/C	AHP
2004	재활전문산재병원	588	통과 (2005)	1.08	0.683
2006	인천보훈병원	1,125	미통과 (2007)	0.25	0.235
2007	국방의료원 신축	5,423	미통과 (2007)	0.10	0.265
2009	경상대학교 창원분원 건립	3,085	통과 (2010)	1.07	0.538
2010	권역외상센터건립	6,161	미통과 (2011)	0.58	0.328
2011	군산전북대병원	2,636	통과 (2012)	1.10	0.603
2013	세종충남대병원	2,677	통과 (2014)	0.94	0.537
2013	산재모병원	4,269	미통과 (2018)	0.73	0.304
2018	국립소방병원	1,522	통과 (2019)	1.08	0.533
2019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5,948	통과 (2021)	0.96	0.56
2022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BTL 사업	1,850	통과 (2024)	1.16	0.645
2022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12,146	통과 (2025)	0.95	0.557
2022	충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4,148	미통과 (2026)	0.52	0.353
2024	아산 경찰병원 건립	4,329	통과 (2025)	0.93	0.519

자료: 기획예산처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 공공의료기관 건립 등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공공보건의료 관련사업이 수월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대응 및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소멸위기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한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제범위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단위: 건, 조원)

구분	면제 건수	면제 규모
2005	3	0.7
2009	30	26.0
2014	40	14.5
2019	47	36.0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2024	39	17.4
2025	38	19.4

자료: 기획예산처

둘째, 현행법에서도 공공보건의료 관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⁵⁾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6. (생략)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생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실례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 법령상 추진사업으로 5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바 있음.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연 도	사업명	면제사유	비고
2009	국립마산병원 현대화사업	법령상 추진 사업	
2010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법령상 추진 사업	
2013	국립 중앙의료원 현대화	법령상 추진 사업	
2016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법령상 추진 사업	
2016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 중부, 영남, 호남 3개 권역	법령상 추진 사업	
2019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2021	대전의료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2021	서부산의료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2021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국가정책적 추진사업	

* 음영: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료: 기획예산처

한편, 기획예산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므로 재정 운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확실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 신설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⁶⁾에서 의결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6)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해당 심의위원회에 예비타당성조사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정부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 또한 현행법으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며,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을 확대⁷⁾하는 등 공공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7)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2022. 12.)

분야	기존 경제적 편익	추가 발굴 경제적 편익
의료 시설	▪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편익 ▪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교통비 절감편익 ▪ 응급사망 감소편익 ▪ 대기시간 단축편익 등	▪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한 재원일수 감소효과 ▪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효과 ▪ 특수질환군 전문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환자의 사회복귀 개선효과 ▪ 의료인력 대상 첨단시뮬레이션 중심 맞춤형 교육효과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22. 12. 20. 시행) 제28조

다만, 보건복지부는 면제 조항을 신설할 경우, 면제 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으로 한정하고, 의결 주체 역시 기획예산처차관이 정부위원으로 포함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⁸⁾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수정안(보건복지부 제시)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생략) 11.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 <u>보건의료기본법</u> 」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생략) 11.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9. 기획예산처차관

참고로, 동일하게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하였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23호, 2024. 7. 11.)에서도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내용만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후 대안반영폐기된 바 있음.

개정안과 유사하게 공공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⁹⁾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9)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68호, 2024. 7. 18)

10)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29호, 2024. 7. 25)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 <u>보건의료기본법</u> 」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3